

#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[1단계] 시행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 [ I ]

-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보건복지부, 2023. 1. 30.)에 따라 자원봉사 현장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일상 방역 강화

##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[1단계] 주요 내용 (붙임2 참조)

-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→ 권고 전환 (1. 30.(월)부터 시행)
-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, 일부 시설\*의 경우 제외
  - \*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
-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백신 추가 접종 적극 권고

## 2 자원봉사 운영 지침
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·의료기관 및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
  - (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) 노인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기관 등
  - (정신건강증진시설)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, 중독자재활시설 등
  - (장애인복지시설)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쉼터, 피해장애아동쉼터 등
  - (의료기관) 보건소, 의원, 병원 등
  - (대중교통수단) 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

□ 고위험군\* 및 취약계층\*\*대상,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에서의  
자원봉사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

- 활동보조, 이동지원, 학습지도, 멘토링, 청결지원, 식사·반찬지원 등  
\*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  
\*\*(코로나19 취약계층) 아동, 장애인 등

□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활동 운영

○ 개인 방역 준수 및 자원봉사 현장 방역수칙 마련

- (개인 방역) 손 소독·씻기 및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
- (현장 방역수칙) 실내 프로그램 운영 시 환기 기준 마련, 활동 전/후  
자원봉사자 건강 체크,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및 확진자 접촉자  
활동 참여 자제 등